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8 호

1. 건설부고시 제 64호(78.3.29)로 시설검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79.8.22)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제939호토(89.11.18) 공람공고한 경부고속도로변시설부지시조구 잠원동 7-1번지의 253필지 도시계획사업(특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건축취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부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조서는 시조구청 공인특지파 및 건설관리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람토록 한다.

198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시조구 잠원동 7-1 외 253필지

2. 구 간 : 한남I.C - 양재I.C 변 만남의광장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좌.우측 50m 구간)

3. 사업의종류 및 명칭

가. 도시계획사업(시설부지)

나. 특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사유지 토지보상후, 수명

조성은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조성.

4. 사업의급보 (토지보상 (사유지 : 68필지 29,281.35㎡))

5. 착수비용동의 : 인가임 ~

6.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7. 토지는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주소,

성명 (법정 토지주소)

첨 부 : 토지주소 1부. 끝.

(제 3 안) 인가증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실시계획 인가증(안)

(제 4 안) 시행안

구청장

수 신 :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 발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참 조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국장)

제 목 : 동 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부고속도로변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하여, 고시안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 부 : 고시안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 5 안) 시행안

수 신 : 총무처장관 (서울특별시) 발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장 소 : 문화공보관 (공보관)

제 목 : 관(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부고속도로변 도시계획사업(농지조성을 위
한 토지보상)에 대하여 고시안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설부지) 실시계획
인가하고, 관(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 구분 : 고시

나. 관(시)보 게재 연명 : 도시계획사업(농지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실시 계획 인가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첨부 : 고시안 사본 2부. 관.

(제 6 안)



수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 시민국장

제목 : 시장 취임단의 신청

1. 서초구 영부고속도로변 도시계획사업(농지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로서, 아래와 같이 취임단의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신청근거 : 도일 150 - 630(77. 4. 19)서울시 위임

(도시계획업무 내부 위임)

나. 신청문서명 : 건설부 보고문, 총무처 관보 게재외퇴문,
인가증.

(제 7 안) 통보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발신 : 서초구청장

제목 :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실시계획 인가 통보

1. 우리구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녹지조
성을 위한 토지보상) 실시 인가하였기 통보하오니, ^{구청장} 관련업무에 참고하고,

2. 관할 동장은 게시판에 게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것.

첨부 : 고시안 사본 1부. 끝.

수신처 : 도시경미과, 건설법미과, 토목과, 자원동, 반포1동, 서초1.2동, 양재동.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 건설부고시 제 64호(78. 3. 22)로 시설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5호(79. 8. 22)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제 939호로(87.11.13) 공람금고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능지 서초구 장원동 7-1번지 외 253필지 도시계획사업(능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권한위임 규정의 의거, 도시계획사업, 능지, 실시기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조서는 서초구청 공원능지와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인람토록 합니다.

1989. 12.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원동 7-1 외 253필지
2. 구 간 : 한남2선-양재2선변 만남의광장간, 고속도로 중앙분리턱에서 좌.우측 50m 구간
3.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가. 도시계획사업 (시설능지)

나. 부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 - 사유지 토지보상후, 수면폭 보충에
고속도로 확장시 받도 보상.

4. 사업의규모 : 토지보상 (사유지 : 63필지 29,281.35[㎡])

5. 착수 및 준공일 : 인가일 ~

6.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서초구청장)

7. 토지는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이 의하여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토지조서)

첨부 토지조서 1부. 끝.

이. 계 목 설 계 도 서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칭	구 간	구 모	착공비준공 일(토지보상) 의 구	경관 의 구	지역 의 구	영양 의 구
서초구 잠원동 7-1의 253 번지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 시행 부지조성윤 위 한 토지보상 - 사유지 보상 후 수립대 조성 은 경부고속도 로 확장시행	한남IC-양재IC 번안단의 확장 구간(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및 서 좌우측 약 50미터 구간)	토지보상 : 63필지 - 적조성 : 경부고속 도로 확장시행도 조성	사업인가일	권고 지 64호 서교 제 375호 (75. 3. 29) (75. 6. 22)	서교시 935호 (89. 11. 15) - 12. 4.	

공 략 명 부

공 략 일시	공 략 자		공 략 내용 및 의 건	비 고
	주 소	성 명		
89. 11. 25.	서초동 1633-8	(주) 여업 김재영	토지보상시 시가 보상 요구	공 회
89. 12. 4.	송파구 잠실 장 미(약) 22-1405	유 병 진	택포 요망.	유 방
"	강남구 논현동 8-1 호	문 명 호	토지보상시 주관성문 고려 하여 보상 요망.	"

1. 농도지역 변경 신청지역
 (단위: ㎡)
 지역명 기정면적 변경후
 주거지역 1,247,000 중 210,000 1,457,000
 자연녹지지역 3,162,000 간 210,000 2,952,000
 병합 도면작성과 관용(도면생략)
 도면은 송파구청 및 모은군청에 보관

① 건설부고시제64호
 서울도시계획시설 일부에 대한 구역 변경 및
 설립, 고시한다. 변경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소속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한다.
 1978년 3월 29일
 건설부장관
 병합 도면작성과 관용(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장에 보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신청지역

면적		비율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8	15	3.16%	2.63%	18.47%	15.47%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신청지역

구분	면적(㎡)	비율
송파구 관동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551,000	3.16%
송파구 관동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331,000	2.63%

지방행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37조
 도시계획시설(특위)지정신청
 건설부고시 제64호(1978. 3. 29)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특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지정신청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

부고시 제41호(1977. 3. 16)의 권한하인 사본에 의
 기 이를 고시한다.
 2. 원시신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공
 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임한다.
 1978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청

① 서울특별시 지정신청지역

구분	면적(㎡)	비율
송파구 관동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551,000	3.16%
송파구 관동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선정동	331,000	2.63%

【5】 1989年11月22日 (水曜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539호

도시계획사업(농지)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64호(78년3월29일)로 제정 고시하고, 서울시 고시 제375호(79년8월22일)로 도시계획사업(농지)지적승인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비(無)지에 대한에는 광고로 가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농지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 공고기간내 지방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공 랑 요 지—

- 가.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농지, 농지(농지)사업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삼성동 7-1의 253필지
 다. 구 간 : 안남I·C-안남II·C변 민남의관장간(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좌·우측 50m 구간)
 라. 사업개요 : 농지조성 161,554.75㎡
 마.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지 : 별첨 토지소재지 참조
 사. 공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농지과(590-3396)
 건설관리과(590-3401)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위치도면 : 별첨
 차.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공원농지과 및 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계	장	과	장
				

3557

1989년 11월 22일 (陽曆十月二十四日 丙戌) 水요일

① (日刊)

서울특별시 고시제539호

도시계획사업 (농지)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64호 (78년 3월 29일)로 제정 고시하고, 서울시 고시 제375호 (79년 8월 22일)로 도시계획시설 (농지) 지적승인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문지하며, 이 수임자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당서는 서초구청 공원농지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 공고기간내 귀향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람요지

- 가.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농지, 농지조성사업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1외 253필지
 다. 구 간 : 한남 1·C-양재 1·C변 민남의광장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좌·우측 50m 구간)
 라. 사업개요 : 농지조성 161,854.75㎡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서초구청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 : 별첨 토지소재 참조
 사. 공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농지과 (580-3396)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위치도면 : 별첨
 차.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공원농지과 및 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國民日報

제	제	과
		

3355